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090100397]

www.misulo.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08-2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1-02]



정 보 공 개 서

(주)빅토 미술로생각하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빅토 미술로생각하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대륭테크노타운19차 1413호]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02-2026-1461]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2-2026-146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사업부 02-2026-146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첨서류

[별첨1]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별첨2] 가맹금 예치신청서

[별첨3]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 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빅토 미술로생각하기	미술로생각하기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대륭테크노타운19차 1413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2.11.22.	2002.12.01.	김시중	02-2026-1461	02-2026-1466
	법인등록번호	110111-2658643	사업자등록번호	214-87-2422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김시중	미술로생각하기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대륭테크노타운19차 1413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시중	02-2026-1461	02-2026-1466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이미선	미술로생각하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시중	02-2026-1461	02-2026-146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미술로생각하기]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미술로생각하기	
상 호	미술로생각하기 OO센터	
상표(서비스표)		등록: 제41-0309316호 출원번호: 제41-2013-0045912
중요 영업표지		2014년부터 대표 영업표지로 사용 중

미술로생각하기는 놀이미술 활동을 통한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미술로생각하기는 국내 최초의 유아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입니다.

유아기의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의 영역과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으로써 특히 유아기에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우뇌의 활동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미술로생각하기는 관찰하기, 소리듣기, 만져보기, 냄새 맡아보기, 맛보기의 5감을 적극 활용한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감성, 창의력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유아기의 필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아이들만의 독창적인 미술 활동을 이끌어냄으로써 풍부한 표현 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부면(자신감, 리더십, 사회성 발달 등)들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1,492,937	190,276	1,302,661	1,189,104	80,064	72,672
2022년	1,406,875	176,887	1,229,988	1,268,184	116,657	117,983
2021년	1,364,647	252,642	1,112,004	1,346,882	174,209	80,213

그 근거자료는 다음[별첨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관련임원	김시중	사내이사	2002.11.22~현재	(주)빅토 미슬로생각하기 사내이사	업무총괄
	이미선	감사	2023.03.31~현재	(주)빅토 미슬로생각하기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상근임원수	비상근임원수	직원수
2023년 12월 31일	1	1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미술로생각하기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13.11.28. 출원 2014.09.30. 등록	출원 제2013-0045912호 등록 제40-1061427호	(주)빅토 미술로생각하기	2024.09.3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미슬로생각하기]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03년 02월 01일

2.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빅토 미슬로생각하기	미슬로생각하기	김시중	2003.02.01~현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대륭테크노타운19차 1413호

3. [미슬로생각하기] 업종

영업표지	업종	
미슬로생각하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유아관련(교육 외)	유아 퍼포먼스 미술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미슬로생각하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06	105	1	99	98	1	92	91	1
서울	24	24	-	25	25	-	24	24	-
부산	3	3	-	3	3	-	2	2	-
대구	11	11	-	11	11	-	10	10	-
인천	4	4	-	3	3	-	2	2	-
광주	2	2	-	2	2	-	2	2	-
대전	5	5	-	5	5	-	5	5	-
울산	-	-	-	-	-	-	-	-	-
세종	3	3	-	3	3	-	3	3	-
경기	37	36	1	33	32	1	32	31	1
강원	3	3	-	2	2	-	2	2	-
충북	3	3	-	2	2	-	2	2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	-	-	-	-	-	1	1	-
전남	2	2	-	1	1	-	1	1	-
경북	5	5	-	6	6	-	4	4	-
경남	2	2	-	1	1	-	1	1	-
제주	1	1	-	1	1	-	0	0	-

5. 최근 3년간 [미술로생각하기] 가맹점 수

(단위: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3	98	5	-	12	10	91
2022	105	3	1	9	10	98
2021	108	3	-	6	10	105

6. [미술로생각하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미술로생각하기]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91	140,727	3,398	312,660	8,914	17,370	576	89곳 산정
서울	24	172,252	4,086	312,660	8,914	121,590	1,502	24곳 산정
부산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10	151,987	3,016	243,180	6,141	34,740	576	10곳 산정
인천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5	225,810	5,341	225,810	6,440	121,590	2,828	5곳 산정
울산	0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31	113,719	3,958	243,180	4,953	23,720	739	31곳 산정
강원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4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0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 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 매출액 = 가맹점에서 보고한 회원수 × 150,000원 (월회원비) >

당사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영업장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 평균을 계산하였습니다. 전체란에는 전국 모든 91개 가맹점 중 6개월 미만 운영한 2개점을 제외한 89개점의 평균값을 기재하였으며, 각 지역은 각 지역별 해당사항에 따라 계산한 값을 기재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미술로생각하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 [미술로생각하기]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사는 [미술로생각하기]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가맹계약 체결가맹점이 없습니다 .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도	91	497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미술로생각하기]와 관련하여 광고비로 사용한 금액은 58,550천원,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17,135천원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75,685천원입니다.(근거 : 별지 1. 2023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체국	금천우체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10	02-838-830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체국의 계좌가 있어야 하며, (계좌가 없는 경우 개설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여 예치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예치 가맹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미슬로생각하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센터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	해당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33,000	계약 체결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표 1.가맹비 세부내역 참조

표 1.<가맹비 세부내역>

구분	금액(천원/VA T별도)	미반환 사유	비고
가입비 및 지역상권분석비	9,000	가입비의 성격과 개설지역 상권분석을 위한 업무 행위 진행으로서 일체 반환되지 아니함	
브랜드사용 및 지역상권보호	5,000	영업개시 후	영업개시 전에는 위약금으로 50% 공제 후 반환,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따른 반환 조정
경영 및 운영 교육비	4,500	경영교육을 시작한 경우	
프로그램교육비	2,800	프로그램교육 이수한 경우	교육시작 전에는 위약금으로 40% 공제 후 반환

프로그램매뉴얼 및 독점사용권	4,500	프로그램 매뉴얼 제공한 경우	매뉴얼 제공 전에는 위약금으로 40% 공제 후 반환
초기 운영 물품비용	1,700	공급이후에는 반환불가	개봉시재판매 불가제품
홍보물품 비용	500		홍보물에 해당센터명 등 내용기입
가맹사업 준비에 따른 본사직원 파견과 준비비용	2,000		인테리어감리 및 가맹사업 준비를 위한 직원파견비용으로서 공급 이전에는 위약금으로서 30% 공제 후 반환

2) 당사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단위:천원/VAT포함)
합계	33,000
가맹비	3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천원/VAT포함/기준:99㎡)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	66,300	2,210	-		-
인테리어	협력업체 외 1개 업체	52,000	1,733	- 계약금(계약 시) 10% - 1차 중도금(공사 시작후 7일 이내)30% - 2차 중도금(공사 시작후 14일 이내)40% - 잔금(공사완료후 3일 이내) 10%	공사/ 공급 전 계약취소	자체시공시 감리비없음
집기 · 비품	협력업체	11,000				-
초도상품	가맹본부	3,300		개원 시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제공, 도면제공, 관리감독, 감사의 대가로 3.3㎡당 132천원(VAT포함)을 위 비용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센터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제한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미술로생각하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천원 /VAT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료	가맹본부	실비	광고 시행 전	광고 실시 전	전국광고를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광고 시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로열티	가맹본부	450	매월 25일	지급방식	사용된 비용
점포환경 개선 비용	계약자	가맹본부 분담 부분 제외 나머지 모두	개별청구	발주 전 소요 비용 공제 후 반환	
지연 이자	가맹본부	연15%	개별 청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여서 반환 안 됨.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경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현재 회계나 재고관리부분은 별도로 가맹본부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금일백일십만원(W1,100,000)(VAT포함)의 재가맹비를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100	갱신, 재계약 즉시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운영하는 미슬로생각하기 센터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 시 당사에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문의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당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미슬로생각하기 센터'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주)빅토 미슬로생각하기의 기본교육 4개 과정인 (총 192주차) 프로그램 교육비(₩10,000,000<부가세별도>)을 납입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 가맹점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기타 가맹본부의 상호 및 상표, 가맹본부의 센터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프로그램, 교구, 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경영매뉴얼, 프로그램 매뉴얼 등)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의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미술로생각하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미술로생각하기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 및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교육 및 재료 제공(용역)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입회선물세트 (가방, 앞치마 구성)			
앞치마 (별도판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원)	단위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교육비	150,000	1개월	공문발송/온라인공지	2024. 5월 기준
입회선물세트	30,000	1세트	공문발송/온라인공지	
앞치마	10,000	1개	공문발송/온라인공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프로그램 교육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미술로생각하기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상의 1개 “동” 단위당 1개점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이 분리 또는 변경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파악하여 가맹본부에게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초기 계약 사항에 준하여 바로 수정하도록 합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영업지역의 개발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는 고객의 편리를 위하여 새로운 센터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미술로생각하기]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미술로생각하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8.4%	1.6%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미술로생각하기]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계약서 제6조 제2항)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 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계약서 제6조 제4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계약서 제23조 1항)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연속 로열티의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의 변경 사항(명의변경, 점포 규모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인력의 채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을 영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계약기간 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프로그램을 제공, 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프로그램의 내용, 순서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프로그램 관리 기준 및 센터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수업 및 운영시간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센터운영현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센터 운영상의 주요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마케팅, TV광고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센터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대해 비협조적인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센터의 운영권 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30조 2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계약서 제39조 제2항)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담당팀 문의 T. 02-2026-1461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빅토 미술로생각하기의 기본교육 4개 과정인 (총 192주차) 프로그램 교육비(W10,000,000<부가세별도>)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을은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합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의 양도 이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미수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 · 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용은 쌍방 간 협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함
대리경영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대리경영을 시킬 수 있으며,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업무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동안 귀하가 [미술로생각하기]와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	----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프로그램 교육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담당팀 문의 T. 02-2026-1461
---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영업시간의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각 수업 시간을 50분으로 하여야 합니다.
- 영업일수의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주5일 이상, 월 20일 이상 개원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종업원의 수 : 원장 1인, 정규교사 1인(가맹점사업자 포함)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자율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센터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센터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교구 취급 여부, 프로그램 운영 상태, 안전 상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센터로서 의무와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미술로생각하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전국광고	30%	70%
지역단위 광고, 개별광고	-	100%
판 촉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다만, 경우에 따라서 가맹본부에서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원 가능함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브랜드의 광고, 홍보, 판촉 등을 진행할 경우, 관련된 인쇄물, 영상물, 기사 등의 모든 제작물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제작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3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제31조 제1항의 간판철거의무, 제31조 제3항의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을”은 “갑”에게 1일당 100,000원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이외에도,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 (비밀유지의무), 제18조 (경업금지의무)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금오억원(₩50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70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만원/VAT별도/기준:99㎡)

구 분	내 용	기 간	비 용
상담절차	- 온라인(인터넷), 유선, 본사방문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2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개발	- 지역선정 - 상권조사 - 점포임대(조건검토)	15일 (임대시까지)	
가맹계약	- 가맹계약체결 - 가맹금 납입 - 가맹비 3,000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 인테리어 공사(3.3㎡당 130만원) °계약금(계약 시) 10% °1차중도금(공사 시작 후 7일이내)30% °2차중도금(공사 시작 후 14일이내)40% °잔금(공사완료 후 3일 이내) 10% - 집기·비품 준비	공사기간 (4주)	
초도상품준비	- 재료(수업관련) - 홍보물 일체(전단지, 베너, 리플렛 등) - 지역광고 &이벤트(협의)	3일	
오픈	- 영업개시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 사업자의 개인 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보공개서 [10]쪽에 기재된 가맹금을 [별첨3]의 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1)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 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 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당사는 [미술로생각하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만원/VAT별도)

교육·훈련종류	이수여부	최소시간	비 용	피교육자	불참 시 불이익
원장경영교육 (개인별학습교육)	강제	3박4일	가맹비에 포함	원장 및 부원장	- 개점지연 - 계약해지
교사 프로그램 교육 (집단실습교육)	강제	미술로생각하 기 프로그램 1회	프로그램비에 포함	원장1인 및 교사 2인	- 개점지연 - 계약해지 - 프로그램공급 및 사용의 중단
원장 및 교사 특별교육	강제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실비	원장 및 교사	- 계약해지 - 프로그램공급 및 사용의 중단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경기	용인수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19 (동천동) IVY타워 302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1년 2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198,00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카드 및 현금매출에 대하여 직영점의 회원수 X 교육비로 계산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OO팀(02-XXX-XXXX)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1.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미술로생각하기
	성명(대표자)	김시중
	주소(사무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대륭테크노타운19차 1413호 (전화: 02-2026-1461)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3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 (가맹희망자 보관용)

본인은 『미술로생각하기』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된 날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2.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3.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날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4.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교육·훈련프로그램
5.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6.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_____ (인)	수령자 : _____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	---

----- (절취선)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미술로생각하기』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된 날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2.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3.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날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4.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교육·훈련프로그램
5.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6.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장소 :
6.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_____ (인)	수령자 : _____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	---